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239
----------	-------

발의연월일 : 2018. 2. 28.

발의자 : 김한표 · 박맹우 · 장석춘
이현승 · 원유철 · 김수민
임이자 · 여상규 · 이채익
정병국 · 이종명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회사의 신용공여 이후 신용공여를 받은 자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금융이용자에게 적극 고지되지 않고 있음.

따라서 채무자는 신용상태가 개선되더라도 제도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하여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은행과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재산 증가나 신용평가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고객에게 은행은 금리인하요구 권리가 있음을 알리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금융이용자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30조의2 신설 등).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금리인하 요구 등) ① 은행과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재산 증가나 신용평가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은행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제1항에 따라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③ 그 밖에 금리인하 요구의 요건 및 절차 등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9조제4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3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지 아니한 경

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리인하요구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

행 후 최초로 신용공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p>제30조의2(금리인하 요구 등) ①</p> <p><u>은행과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재산 증가나 신용평가 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u></p> <p>② 은행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제1항에 따라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p> <p>③ 그 밖에 금리인하 요구의 요건 및 절차 등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제69조(과태료) ① ~ ③ (생략) ④ 은행의 임원등 또는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69조(과태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u><신 설></u>	<p>1. 제3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p>

5. ~ 8. (생 략)

⑤ (생 략)

5. ~ 8.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